

# 안산시 빙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8-628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. 5. 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### □ 제안이유

-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49조(임대주택건설에 따른 특례)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-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이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과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로 분리되어 관련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-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정의)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### □ 주요내용

-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49조제1항 인용조문 개정으로 인하여 조례상의 조문을 수정함(안 제34조제1항)
-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49조제1항제2호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주택 비율이 10% 이상 20% 미만이 되도록 건설하는 경우 시·도 조례로 위임한 용적률 상한 적용방법을 규정함(안 제34조제2항)
-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의 개정으로 인하여 조례상의 조문 및 별표를 수정함(안 제11조, 안 제33조, 안 별표 1)
-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이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과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로 분리가 되어 조례상의 조문을 수정함(안 제33조)

- 개정조례안 : 붙임1
-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2
- 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3
-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- 예산수반사항 : 붙임4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)
- 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  - 입법예고 : 2021. 4. 9. ~ 2021. 4. 29. (20일간)
- 기타 참고사항
  - 현행조례 : 붙임5
  - 방침결정문 : 붙임6

## < 불임 1 >

### 안산시 빙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빙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 제목 “(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)” 을 “(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 등)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감정평가업자” 를 “감정평가법인 등” 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감정평가업자 중” 을 “감정평가법인등 중” 으로, “감정평가업자를” 을 “감정평가법인등을” 로, “별표 1과 같다” 를 “별표 1에 따른다” 로 하고, 같은 호 가목 중 “감정평가업자” 를 “감정평가법인등” 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감정평가업자가” 를 “감정평가법인등이” 로 한다.

제33조제1항제2호다목 중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 제9조 제2항” 을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제8조” 로, “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” 를 “「감정평가법」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” 로 한다.

제3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법 제49조제1항 후단” 을 “법 제49조제1항제1호” 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거지역에서 빙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을 시행할 경우 용적률의 상한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$$\text{용적률의 상한} = b + \left[ \frac{\text{임대주택 비율}(\%)}{20(\%)} \times (a - b) \right]$$

a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  
상한

b : 「안산시 도시계획 조례」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주택과
임 안 자	실·과장	주택과장
	직위·성명	윤 병 천
	담당·팀장	주거정비팀장
	직위·성명	김 병 식
	담당자	추 재 철
	성명·전화	(행정 2388)

[별표 1]

**감정평가법인등 선정 평가기준 (제11조제1호 관련)**

**① 평가항목 :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수행실적(배점 : 20점)**

- 최근 3년간 경기도내 정비사업(재개발·재건축·도시환경정비·가로주택정비사업)의 감정평가 계약 및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실적을 평가함
- 평가전수(10점)

구 분	상위20%이내	20%초과~40%	40%초과~60%	60%초과~80%	80%초과~100%
평 점	10	8	6	4	2

- 평가금액(10점)

구 분	상위20%이내	20%초과~40%	40%초과~60%	60%초과~80%	80%초과~100%
평 점	10	8	6	4	2

**② 평가항목 : 감정평가사 수(배점 : 15점)**

○ 감정평가법인등 소속 감정평가사 수 평가기준

-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의 경기도소재 사무소에 소속된 감정평가사 수를 평가함

○ 평가배점(15%) - 경기도 소재 사무소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

구 분	20명 초과	16~20명	11~15명	6~10명	5명 이하
평 점	15	14	13	12	11

**③ 평가항목 : 기존 평가참여 규모(배점 : 30점)**

- 경기도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평가기준 시행일 이후 시장·군수가 선정하여 평가한 정비사업 관리처분(종전, 종후) 평가금액

및 횟수(한국감정평가협회의 실적자료를 기준으로 하되, 실적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선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평가금액은 추정금액으로 한다)를 기준으로 평가함

- 기 참여 평가총액(15점)

구 분	하위 20%이내	하위 20%초과~40%	하위 40%초과~60%	하위 60%초과~80%	하위 80%초과~100%
평 점	15	12	9	6	3

- 기 참여 평가횟수(15점)

구 분	하위 20%이내	하위 20%초과~40%	하위 40%초과~60%	하위 60%초과~80%	하위 80%초과~100%
평 점	15	12	9	6	3

④ 평가항목 : 행정처분 횟수(배점 : 15점)

- 최근 3년간 감정평가법인등 및 경기도 소재 사무소 소속 감정평가사의 행정처분 횟수를 기준으로 평가함(한국감정평가협회 확인)
- 감정평가법인등은 업무정지, 과징금 및 과태료부과 횟수를 기준으로, 소속 감정평가사는 자격취소, 등록취소, 업무정지 및 견책 횟수를 기준으로 하되, 업무정지, 자격취소 및 등록취소는 횟수를 2배로 환산하여 산정한다.

구 분	없음	3회 이하	4~6회	7~9회	10회 이상
평 점	15	12	9	6	3

⑤ 평가항목 : 감정평가수수료 적정성(배점 : 10점)

-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기준의 기준요율을 기준으로 평가에 참여한 업자의 제안가격을 평가함

구분	기준요율 평가수수료의 80%금액	감정평가법인등이 제안한 수수료(금액) (국토부고시 기준요율금액의 80%초과 ~ 100%미만)	국토부고시 기준요율 적용 수수료(금액) (100%~120%)
평점	10점	평가점수 = {(국토부고시 기준요율금액 -제안금액)/국토부고시 기준요율금액} × 50	0점

## ⑥ 평가항목(비계량) :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(배점 : 10점)

- 시장이 감정평가법인등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다. 이 경우 위원 구성은 평가구역 조합의 임원이나 조합이 추천한 전문가 1인을 포함할 수 있으며, 위촉직 위원의 성별비율을 「양성 평등기본법」 제21조 제2항에 따른다.

평가대상	평가항목														
	업무추진계획(25%)					인력투입계획(25%)					사후서비스 제안정도(50%)				
	평점	10	8	6	4	2	10	8	6	4	2	10	8	6	4

< 불임 2 >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1조(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) 영 제 10조제4항에 따른 <u>감정평가업자의 선정</u> 기준 ·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시장은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 한 법률」(이하 “감정평가법”이라 한 다) 제2조제4호의 <u>감정평가업자</u> 중 같 은 법 제29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감정 평가법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평가항목을 평가하여 <u>감정평가업</u> <u>자를 선정</u>하며, 세부 평가기준은 <u>별표 1</u> 과 같다.</p> <p>가. <u>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실적</u> 나. ~ 바. (생 략)</p> <p>2. <u>감정평가업자가</u>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 한다.</p> <p>가. ~ 다. (생 략)</p>	<p>제11조(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 등) -- ----- <u>감정평가법인등</u> -----.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 <u>감정평가법인등 중</u> ----- ----- ----- ----- <u>감정평가법</u> <u>인등을</u> ----- <u>별표 1</u> 에 따른다.</p> <p>가. <u>감정평가법인등</u> ----- 나. ~ 바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감정평가법인등이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3조(주차장 사용권의 확보 방법) ①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주차장 사용권 확보 를 위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제1호에 따라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사 용권을 확보하는 경우 주차장의 설치비 용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산정한다.</p>	<p>제33조(주차장 사용권의 확보 방법) ① 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-----.</p>

## 가. 나. (생 략)

다. 토지가액은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2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하되, 이에 따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.

### ② (생 략)

제34조(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) 법 제49조제1항 후단에서 “시·도조례로 정하는 비율”이란 전체 연면적 대비 임대주택의 연면적(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한다)의 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을 말한다.

### <신 설>

## 가. 나. (현행과 같음)

다. -----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제8조-----  
-----  
-----  
--- 「감정평가법」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-----  
-----.

### ② (현행과 같음)

제34조(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) ① 법 제49조제1항제1호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②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거지역에서 빙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용적률의 상한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$$\text{용적률의 상한} = b + \left[ \frac{\text{임대주택 비율}(\%)}{20(\%)} \times (a - b) \right]$$

a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 상한  
b : 「안산시 도시계획 조례」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[별표 1]</p> <p>감정평가업자 선정 평가기준 (제11조제1호 관련)</p> <p>① 평가항목 :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실적(배점 : 20점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최근 3년간 경기도내 정비사업(재개발·재건축·도시환경정비·가로주택정비사업)의 감정평가 계약 및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실적을 평가함</li> <li>- 평가전수(10점)</li> </ul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<th>상위20%이내</th><th>20%초과~40%</th><th>40%초과~60%</th><th>60%초과~80%</th><th>80%초과~100%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평 점</td><td>10</td><td>8</td><td>6</td><td>4</td><td>2</td></tr> </tbody> </table> <p>- 평가금액(10점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<th>상위20%이내</th><th>20%초과~40%</th><th>40%초과~60%</th><th>60%초과~80%</th><th>80%초과~100%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평 점</td><td>10</td><td>8</td><td>6</td><td>4</td><td>2</td></tr> </tbody> </table> <p>② 평가항목 : 감정평가사 수(배점 : 15점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감정평가업자 소속 감정평가사 수 평가기준</li> <li>- 「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의 경기도소재 사무소에 소속된 감정평가사 수를 평가함</li> <li>○ 평가배점(15%) - 경기도 소재 사무소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</li> </ul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<th>20명 초과</th><th>16~20명</th><th>11~15명</th><th>6~10명</th><th>5명 이하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평 점</td><td>15</td><td>14</td><td>13</td><td>12</td><td>11</td></tr> </tbody> </table> <p>③ 평가항목 : 기존 평가참여 규모(배점 : 30점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경기도 감정평가업자 선정 평가기준 시행일 이후 시장·군수가</li> </ul> <p>[별표 1]</p> <p>감정평가법인등 선정 평가기준 (제11조제1호 관련)</p> <p>① 평가항목 :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수행실적(배점 : 20점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최근 3년간 경기도내 정비사업(재개발·재건축·도시환경정비·가로주택정비사업)의 감정평가 계약 및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실적을 평가함</li> <li>- 평가전수(10점)</li> </ul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<th>상위20%이내</th><th>20%초과~40%</th><th>40%초과~60%</th><th>60%초과~80%</th><th>80%초과~100%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평 점</td><td>10</td><td>8</td><td>6</td><td>4</td><td>2</td></tr> </tbody> </table> <p>- 평가금액(10점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<th>상위20%이내</th><th>20%초과~40%</th><th>40%초과~60%</th><th>60%초과~80%</th><th>80%초과~100%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평 점</td><td>10</td><td>8</td><td>6</td><td>4</td><td>2</td></tr> </tbody> </table> <p>② 평가항목 : 감정평가사 수(배점 : 15점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감정평가법인등 소속 감정평가사 수 평가기준</li> <li>-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의 경기도소재 사무소에 소속된 감정평가사 수를 평가함</li> <li>○ 평가배점(15%) - 경기도 소재 사무소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</li> </ul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<th>20명 초과</th><th>16~20명</th><th>11~15명</th><th>6~10명</th><th>5명 이하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평 점</td><td>15</td><td>14</td><td>13</td><td>12</td><td>11</td></tr> </tbody> </table> <p>③ 평가항목 : 기존 평가참여 규모(배점 : 30점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경기도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평가기준 시행일 이후 시장·군수</li> </ul>	구 분	상위20%이내	20%초과~40%	40%초과~60%	60%초과~80%	80%초과~100%	평 점	10	8	6	4	2	구 분	상위20%이내	20%초과~40%	40%초과~60%	60%초과~80%	80%초과~100%	평 점	10	8	6	4	2	구 분	20명 초과	16~20명	11~15명	6~10명	5명 이하	평 점	15	14	13	12	11	구 분	상위20%이내	20%초과~40%	40%초과~60%	60%초과~80%	80%초과~100%	평 점	10	8	6	4	2	구 분	상위20%이내	20%초과~40%	40%초과~60%	60%초과~80%	80%초과~100%	평 점	10	8	6	4	2	구 분	20명 초과	16~20명	11~15명	6~10명	5명 이하	평 점	15	14	13	12	11
구 분	상위20%이내	20%초과~40%	40%초과~60%	60%초과~80%	80%초과~10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평 점	10	8	6	4	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상위20%이내	20%초과~40%	40%초과~60%	60%초과~80%	80%초과~10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평 점	10	8	6	4	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20명 초과	16~20명	11~15명	6~10명	5명 이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평 점	15	14	13	12	1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상위20%이내	20%초과~40%	40%초과~60%	60%초과~80%	80%초과~10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평 점	10	8	6	4	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상위20%이내	20%초과~40%	40%초과~60%	60%초과~80%	80%초과~10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평 점	10	8	6	4	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20명 초과	16~20명	11~15명	6~10명	5명 이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평 점	15	14	13	12	1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선정하여 평가한 정비사업 관리처분(종전, 종후) 평가금액 및 횟수(한국감정평가협회의 실적자료를 기준으로 하되, 실적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선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평가금액은 추정금액으로 한다)를 기준으로 평가함

#### - 기 참여 평가총액(15점)

구 분	하위 20%이내	하위 20%초과~40%	하위 40%초과~60%	하위 60%초과~80%	하위 80%초과~100%
평 총	15	12	9	6	3

#### - 기 참여 평가횟수(15점)

구 分	하위 20%이내	하위 20%초과~40%	하위 40%초과~60%	하위 60%초과~80%	하위 80%초과~100%
평 총	15	12	9	6	3

#### ④ 평가항목 : 행정처분 횟수(배점 : 15점)

- 최근 3년간 감정평가업자 및 경기도 소재 사무소 소속 감정 평가사의 행정처분 횟수를 기준으로 평가함(한국감정평가협회 확인)
- 감정평가업자는 업무정지, 과징금 및 과태료부과 횟수를 기준으로, 소속 감정평가사는 자격취소, 등록취소, 업무정지 및 견적 횟수를 기준으로 하되, 업무정지, 자격취소 및 등록취소는 횟수를 2배로 환산하여 산정한다.

구 分	없음	3회 이하	4~6회	7~9회	10회 이상
평 총	15	12	9	6	3

#### ⑤ 평가항목 : 감정평가수수료 적정성(배점 : 10점)

-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감정평가업자의 보수기준의 기준요율을 기준으로 평가에 참여한 업자의 제안가격을 평가함

구분	기준요율 총가수수료의 50%금액	감정평가업자가 제안한 수수료(금액) (국토부고시 기준요율금액의 80%초과 ~ 100%미만)		국토부고시 기준요율 적용 수수료(금액) (100%~120%)
		기준요율 총가수수료의 50%금액	국토부고시 기준요율 적용 수수료(금액) (100%~120%)	
평점	10점	평가점수 = ((국토부고시 기준요율금액 - 제안금액)/국토부고시 기준요율금액) × 50	9점	9점

#### ⑥ 평가항목(비계량) :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(배점 : 10점)

- 시장이 감정평가업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다. 이 경우 위원 구성은 평가구역 조합의 임원이나 조합이 추천한 전문가 1인을 포함할 수 있으며, 위촉직 위원의 성별비율을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 제2항에 따른다.

평가대상	평가항목											
	업무추진계획(25%)				인력투입계획(25%)				사후서비스 제공정도(50%)			
평 총	10	8	6	4	2	10	8	6	4	2	10	8

가 선정하여 평가한 정비사업 관리처분(종전, 종후) 평가금액 및 횟수(한국감정평가협회의 실적자료를 기준으로 하되, 실적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선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평가금액은 추정금액으로 한다)를 기준으로 평가함

#### - 기 참여 평가총액(15점)

구 分	하위 20%이내	하위 20%초과~40%	하위 40%초과~60%	하위 60%초과~80%	하위 80%초과~100%
평 총	15	12	9	6	3

#### - 기 참여 평가횟수(15점)

구 分	하위 20%이내	하위 20%초과~40%	하위 40%초과~60%	하위 60%초과~80%	하위 80%초과~100%
평 총	15	12	9	6	3

#### ④ 평가항목 : 행정처분 횟수(배점 : 15점)

- 최근 3년간 감정평가법인등 및 경기도 소재 사무소 소속 감정 평가사의 행정처분 횟수를 기준으로 평가함(한국감정평가협회 확인)
- 감정평가법인등은 업무정지, 과징금 및 과태료부과 횟수를 기준으로, 소속 감정평가사는 자격취소, 등록취소, 업무정지 및 견적 횟수를 기준으로 하되, 업무정지, 자격취소 및 등록취소는 횟수를 2배로 환산하여 산정한다.

구 分	없음	3회 이하	4~6회	7~9회	10회 이상
평 총	15	12	9	6	3

#### ⑤ 평가항목 : 감정평가수수료 적정성(배점 : 10점)

-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기준의 기준요율을 기준으로 평가에 참여한 업자의 제안가격을 평가함

구분	기준요율 총가수수료의 50%금액	감정평가업자가 제안한 수수료(금액) (국토부고시 기준요율금액의 80%초과 ~ 100%미만)		국토부고시 기준요율 적용 수수료(금액) (100%~120%)
		기준요율 총가수수료의 50%금액	국토부고시 기준요율 적용 수수료(금액) (100%~120%)	
평점	10점	평가점수 = ((국토부고시 기준요율금액 - 제안금액)/국토부고시 기준요율금액) × 50	9점	9점

#### ⑥ 평가항목(비계량) :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(배점 : 10점)

- 시장이 감정평가업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다. 이 경우 위원 구성은 평가구역 조합의 임원이나 조합이 추천한 전문가 1인을 포함할 수 있으며, 위촉직 위원의 성별비율을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 제2항에 따른다.

평가대상	평가항목											
	업무추진계획(25%)				인력투입계획(25%)				사후서비스 제공정도(50%)			
평 총	10	8	6	4	2	10	8	6	4	2	10	8